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4가단24900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조세형

피고B

변론 종결2024. 11. 6.

판결 선고2024. 12. 18.

주 문

- 가. 피고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18.6분의 10.621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54.5분의 4.95 지분에 관하여 각 2024. 1. 26.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18.6분의 10.621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 26. 접수 제10484호로 마친,
 -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54.5분의 4.95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 26. 접수 제10483호로 마친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 1) 원고는 C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30368)를 제기하여 2014. 7. 1. 'C은 주식회사 D 등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64,267,260원 및 그 중 194,208,529원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4. 6. 3.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7.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 2) 원고의 C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의 원리금은 2024. 5. 22. 기준 574,736,601원에 이른다.

나.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 1) 망 E(이하 '망인')는 1998. 11. 5.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18.6분의 31.863 지분,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54.5분의 14.85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 망인은 2024. 1. 1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C(장녀), 피고(장남), F(차녀)가 각 1/3 비율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을 상속하였다.
- 3) C, 피고, F은 2024. 1. 26.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2024. 1.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의 채무초과 상태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원고에 대한 판결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강원 고성군 G외 4필지 지상 H건물 제3층 I호의 1/10 지분,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는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원고는 C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적법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서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2) C이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 1/3을 포기하여 이를 피고에게 귀속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체결한 것은 앞서 본바와 같은바,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와 남매관계인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 중 C의 상속지분인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C에게, 수익자인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18.6분의 10.621 지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54.5분의 4.95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주문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강지현

별지